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「국가·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-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춘 선서문 개선(안 제2조제3항)
-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가능 경력 규정(안 제18조의2)
-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(안 제19조제6항)
- 연가공제 사유에 강등에 따른 직무 정지기간을 명시(안 제20조제1항)
- 공가의 건강검진 관련규정 개정(안 제22조제5호)
- 휴가일수 산정 등 복무규정과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 정비

4. 참고사항

- 「국가·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및 「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」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1조제1항

5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임용시 실시하는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고 또한,

대통령령에서 위임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경력 규정,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토록 규정하는 등 「국가·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에 맞춰 하위제도를 정비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 법령에 저촉사항 없음